

독일의 교통방해에 대한 형사제재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I. 한국의 일반교통방해죄와 독일형법상 교통방해죄의 개요

이 글의 목표는 한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와 비교할 수 있는 독일의 교통방해에 관한 제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교통방해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185조 일반교통방해죄¹⁾에서 교통방해에 관하여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불통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까지 포괄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는 18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85조의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

해치사상죄(18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189조) 및 미수범(190조)도 처벌된다.

독일 형법은 제 28장 공공위험의 죄(Gemeingefährliche Straftaten)라는 표제 아래 315조부터 316b조를 제외한 316c조까지에서 교통방해에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한 침해(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Straßenverkehr)²⁾를 규정하고 있는 315b조가 한국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15c조 역시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야기(Gefährdung des Straßenverkehrs)를 규정하고 있으나, 315b조는 교통 외부적 침해, 315c조는 교통 내부적 행위에 의한



- 1)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독일어 번역상 '위험한 침해' 이지만 한국형법상 교통방해와 구성요건이 비슷하므로 교통의 침해가 아닌 '교통방해'로 번역하기도 한다. 법무부, 법무자료 제210권, 독일신형법, 1997, 217쪽 참조.

위험야기를 제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외에 315조와 315a조는 모두 철도·선박·항공에 관한 교통방해를 제재하고 있으며, 역시 각각 교통외부에서의 침해(315조)와 교통 내부에서의 위험야기(315a조)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독일 형법상 교통방해에 관련된 범죄

- § 315 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Bahn-, Schiffs- und Luftverkehr (철도·선박·항공에 대한 위험한 침해)
- § 315a Gefährdung des Bahn-, Schiffs- und Luftverkehrs (철도·선박·항공에 대한 위험야기)
- § 315b 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Straßenverkehr(도로교통에 대한 위험한 침해)
- § 315c Gefährdung des Straßenverkehrs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야기)
- § 315d Schienenbahnen im Straßenverkehr (도로교통상의 궤도차량)
- § 316 Trunkenheit im Verkehr(음주운전)
- § 316a Räuberischer Angriff auf Kraftfahrer(운전자에 대한 강도)

§ 316c Angriffe auf den Luft- und Seeverkehr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 방해·파괴)

아래에서는 한국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가장 유사한 독일 형법 316b조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한 침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II). 또한 316b조에서 ‘교통 외부적 침해’이라는 뜻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 내부적 침해인 315c조가 자주 비교된다는 점에서 315c조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III).

II. 도로교통에 대한 외부적 침해 : 형법 제 315b조

1. 구성

(1) 내용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한 침해’라는 표제어를 가진 형법 제315b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5b조³⁾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침해하고, 이로



3) § 315b 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Straßenverkehr

(1) Wer die Sicherheit des Straßenverkehrs dadurch beeinträchtigt, dass er

1. Anlagen oder Fahrzeuge zerstört, beschädigt oder beseitigt,
2. Hindernisse bereitet oder

인하여 타인의 신체, 생명 또는 고가 물건을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교통시설 또는 자동차의 파괴, 손상 또는 제거
 2. 장애물의 설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의 실행
- (2)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행위자가 제3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4)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5) 제1항의 경우에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15b조의 1항은 고의의 범죄행위와 위험결과와 관련된 행위를 다루고 있다. 제315조 이하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구성요건들은 각각 범죄행위와 위험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동조 2항은 미수범 처벌에 대한 규정이다. 동조 4항은 고의의 범죄행위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험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동조 5항은 과실의 범죄행위와 이를 통해 과실로 발생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법익

이 규정은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도로교통에서의 침해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신체, 생명 및 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3) 적용범위

제315c조와 마찬가지로 제315b조는 중요한 도로교통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범죄행위-위험결과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315c조가 교통위반행위, 즉 교통



3. einen ähnlichen, ebenso gefährlichen Eingriff vornimm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 Der Versuch ist strafbar.
 - (3) Handelt der Täte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315 Abs. 3, so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n minder schweren Fällen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 (4)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5)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4) 독일형법 제13조 부작위범

내부적 사건(verkehrsinterne Vorgang)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315b조는 교통 외적인 침해(verkehrsfremde Eingriff)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위법범이다.

(4) 공공도로교통의 의미

이 조문에서 공공도로교통은 유·무료로 모든 사람을 위해, 또는 적어도 일반적으로 규정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이 허락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BGH NStZ 2004, 625). 자동차도로(고속도로, 지역주민이용도로), 자전거도로, 도보통행로, 광장, 연결통로, 교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관계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적인 길이라도 교통을 위해 공개되어 있으면 공공도로교통에 속한다.

2. 구성요건행위

이 규정은 제315조 이하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성요건들은 각각 범죄행위와 위험결과로 구성 되어 있다.

(1) 범죄행위

1) 시설 등의 파괴(315b조 1항 1호)

① 범죄행위의 대상은 공공 도로교통 시설물 또는 차량이다. 시설물이란 도로교통에 사용되기 위해 고정되어 있으며 영구적으로 고안되어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물에는 도로 외에도 주차공간 또는 대중

에게 사용을 위해 공개된 주차건물 등과 같은 다른 공공 교통부지 및 교통표지판 등도 해당된다. 차량은 공공 교통에서 나타나는 모든 운송수단을 의미하며 동력장치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즉 자동차와 함께 전차 및 자전거들도 이 규정상의 차량에 해당한다.

- ② 범죄 대상물이 파괴(Zerstören), 손상(Beschädigung) 또는 제거(Beseitigen)되어야 한다. 제거된다는 의미는 대상물이 해당 장소에서 이동되어 그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예: 50km로 감속할 것과 위험한 커브구간을 알리는 경고표지판·교통표지판이 제거되어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경우).
- ③ 범죄행위는 도로교통안전의 침해를 가져와야만 한다. 교통표지판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이 인지가 가능하며 경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교통외적 침해이어야 한다.

2) 장애물 설치(315b조 1항 2호)

① 장애물 설치(Bereitung der Hindernisse)란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중지시키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로차단물 및 철선의 설치(OLG Hamm NJW 1965, 2167), 고속도로상에 돌멩이를 투척하거나 또는 거대한 나뭇조각을 투척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운전자를 멈추게 하기 위해 도로 위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것은 장애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BGH StV 2002, 361). 연방대법원(BGH NStZ 2007, 34; Jahn, Jus 2007, 89)에 따르면, 범죄자가 고속도로 위에 사람을 던져서 희생자로 만들고 이로 인해 이 시체를 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장애물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한다. 교통통제를 위한 건축상의 조치들도 장애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오직 교통행정청에게만 일정한 요건들하에서 허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OLG Frankfurt NZV 1992, 38).

② 교통안전의 침해 및 위험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3)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315조 1항 3호)

원칙적으로 ‘교통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와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침해가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손상을 입히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침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 위협을 야기하지만, 이러한 침해가 교통의 진행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침해행위의 예로는 빠르게 주행 중인 차량 위로 다리에서 돌맹이가 떨어지는 경우(BGH NStZ 2003, 206; BGHSt 48, 119), 또는 잘못된 표식이나 신호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4) 교통 외부에서의 침해

1~3호 모두 교통 외부에서의 침해이어야 한다. 평온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도로교통질서 위반행위는 315c조로 규율되며, 315b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및 다수견해는 교통관계 ‘내부’ 에서라도 교통 외적인 침해를 하는 경우도 315b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교통 외부에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히 1항 3호를 규율할 때 많이 논의된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통위반행위들도 1항 3호 규정의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 에 포함될 수 있다. 동승자가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운전자의 핸들을 잡는 경우(BGH VRS 36, 267), 또는 시동키를 뽑아버리는 경우, 핸들 고정장치를 풀어버려서 차량의 방향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OLG Karlsruhe NJW 1978, 1391)를 들 수 있다. 제315c조와의 경계설정 부분에서는, 제315b조(1항 2호 및 3호)에 따른 가벌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315b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교통참여자가 ① 객관적으로는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② 주관적으로는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차량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 범행자가 원활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관점에서 차량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투입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적어도 손해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BGHSt 48, 233; BGH NStZ 2004, 320; BGH NStZ RR 2006, 109). 그래야만

제315c조의 구성요건을 넘어서는 비전형적인 도로교통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5) 부작용

1항 1~3호는 형법 제13조⁴⁾의 전제조건 충족시 부작용으로 행해질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가 자신이 사고를 내거나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차로에 장애가 생긴 경우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 부작용도 가능하다. 적재된 화물이 도로 위로 떨어진 경우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BGHSt 7, 311; OLG Karlsruhe NJW 1960, 2018), 사고 사망자의 시체를 유기, 도로에 기름이 가득 흐른 것을 방치, 건설책임자로서 도로건설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범행결과

1) 도로교통안전의 침해 야기

범행은 우선 도로교통안전의 침해를 야기해야만 한다. 연방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안전 침해가 공적인 교통공간(Verkehrsraum)의 바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범행자가 공공도로를 벗어나 도로 바깥의 잔디밭을 주행하면서 희생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희생자를 차로 친 경우는 이 조항의 범행결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BGH NStZ 2004, 625).

2) 법익의 위태화

또한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고가물을 위태롭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 때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이다. 1항의 문맥에 따라 이러한 구체적 위험은 ‘교통안전의 침해를 통한’ 결과로써 야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2단 구성에 따라 1항 1~3호에 언급된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추상적 위험범과 (타인의 생명, 신체, 고가물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이 서로 결합되게 된다.

3. 미수범 (315b조 2항)

미수는 (고의-고의 결합의 경우) 가벌성이 인정된다(제315b조 2항). 범행의 결과로 구체적인 위험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행자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미수의 가벌성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하수구의 뚜껑을 열고 이를 하수구 갭 안에 집어넣는 행위는 315b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을 추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범행의 실행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 아무에게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의 미수가 된다(BGH NStZ 2002, 648).



- (1)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결과의 불발생을 보증하여야 할 합법적 의무가 있고 그 부작용이 작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2) 부작용범의 형은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다.

4. 과실범 (315b조 4,5항)

- 1) 범행자가 위험결과의 관점에서만 과실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제315b조 4항에 따른 가벌성이 존재한다.
- 2) 범행자가 범행의 관점에서도 과실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제315b조 5항이 적용된다.

5. 공범

제315c조와는 다르게 제315b조에서는 공범과 방조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III. 도로교통에 대한 내부적 침해 : 형법 제 315c조

1. 내용

315c조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315c조

- (1) 도로교통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5) § 315c Gefährdung des Strassenverkehrs

(1) Wer im Strassenverkehr

1. ein Fahrzeug führt, obwohl er

- a) infolge des Genusses alkoholischer Getränke oder anderer berauschender Mittel oder
- b) infolge geistiger oder körperlicher Mängel nicht in der Lage ist, das Fahrzeug sicher zu führen, oder

2. grob verkehrswidrig und rücksichtslos

- a) die Vorfahrt nicht beachtet,
- b) falsch überholt oder sonst bei Überholvorgängen falsch fährt,
- c) an Fussgängerüberwegen falsch fährt,
- d) an unübersichtlichen Stellen, an Strassenkreuzungen, Strasseneinmündungen oder Bahnübergängen zu schnell fährt,
- e) an unübersichtlichen Stellen nicht die rechte Seite der Fahrbahn einhält,
- f) auf Autobahnen oder Kraftfahrstrassen wendet, rückwärts oder entgegen der Fahrtrichtung fährt oder dies versucht oder
- g) haltende oder liegende Fahrzeuge nicht auf ausreichende Entfernung kenntlich macht, obwohl das zur Sicherung des Verkehrs erforderlich ist, und dadurch Leib oder Leben eines anderen Menschen oder fremde Sachen von bedeutendem Wert gefährde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ist der Versuch strafbar.

(3) W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1.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oder
2. fahrlässig handelt und die Gefahr fahrlässig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신체, 생명 또는 고가물을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다음 a) 또는 b)의 이유로 인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a) 알코올 음료 또는 기타 각성제의 복용 b) 정신적·신체적 결함
2. 중대한 교통법규의 위반이나 중과실로 범한 다음 a) 내지 g)의 행위
 - a) 우선진행권의 무시
 - b) 추월방법위반 또는 기타 추월과정에서의 잘못된 운전
 - c) 횡단보도에서의 잘못된 운전
 - d) 전경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 교차로, 도로합류지점 또는 철도횡단 지점에서의 과속 운전
 - e) 전경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에서 차량 우측통행의 위반
 - f)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회전, 후진, 역방향 주행 또는 그 시도
 - g)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중인 자동차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 행위
- (2)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
2.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그 위험을 야기한 자

2. 구성

이 규정의 보호법익은 특정한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이다. 제316조(음주운전 관련 규정)와는 달리 제315c조는 구체적 위험범과 관련된 조항이다. 제315b조가 도로교통 외적인 침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제315c조는 위험결과를 야기하는(중대한) 교통위반 행위를 다루고 있다. 제315조 이하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제315c조 역시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위험야기에 대해 전통적인 고의-고의 결합규정(제315c조 1항) 외에 고의-과실 결합규정(동조 3항 1호), 과실-과실결합규정(동조 3항 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 현 경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